



CONTENTS



1. 개요	04
2. 근거법령	05
3. 회수의 종류	06
4. 회수대상 및 회수 등급	07
5. 회수절차 및 관리	12
6. 행정처분 기준	26
7.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이용 방법	28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40
첨부	
1. 위해식품등 회수지침(공무원 지침서)	46
2. 행정대집행법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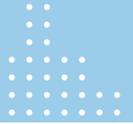
해당 자료는 **위해식품등 회수 업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으며,
위해식품등 회수 업무 관련 부서 담당 직원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는 **2025년 3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2071

| 팩스번호 : 043-719-2050



☑ 정의

‘회수’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들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

☑ 목적

회수는 위해식품등의 신속한 유통·판매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식품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회수 용어

생산(수입)량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대상 식품등과 동일한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의 생산(수입)량 전체 ※ 생산(수입)량 = 창고재고량 + 출고량(유통재고량 + 소비량)
창고재고량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영업자가 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수입식품등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에 보관하고 있는 양
출고(판매)량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영업자의 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수입식품등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진열중인 유통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 ※ 출고량 = 유통재고량 + 소비량* (최종 소비자 판매량) * 수거검사, 자가품질검사 등으로 소진된 물량도 소비량에 포함
유통재고량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 ※ 유통재고량 = 출고량 - 소비량(최종 소비자 판매량)
회수계획량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명령을 받은 회수영업자가 회수 제품의 유통경로, 소비기한, 소비량, 평균 소비주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산출한 유통재고량 * 창고재고량은 회수계획량에 미포함
회수량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계획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 된 양
폐기량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재고량 + 회수량 * 폐기량 ≤ 생산(수입)량
회수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재고량(회수계획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 ※ 회수실적(%) = (회수량 / 유통재고량) × 100

02 | 근거 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 (식품등의 회수)

- ① 사업자는 생산·판매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 사업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영업자 이외의 일반사업자 모두 포함
 - ※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 「식품위생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별표 18)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72조 (폐기처분 등)	-	제87조 (회수명령 및 압류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88조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별표 2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제15조 (회수·폐기처분 등의 기준)

☑ 회수대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 위반한 식품등 •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 위반한 식품등 •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 위반한 식품등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규정 위반한 식품등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규정 위반한 식품등 •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규정 위반한 식품등 •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규정 위반한 식품등 •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2항 규정 위반한 식품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표시의 기준)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 제4조(표시의 기준) 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식품등

03 | 회수의 종류



☑ 구분 :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정부회수)와 자율회수

구분	의무회수 (영업자 회수, 정부회수)		자율 회수
법적근거	법 제45조 제1항	법 제72조 제3항	-
내용	<영업자 회수> 자가품질검사 및 식품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	<정부 회수>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회수	
회수 개시 주체 (회수 출발점)	영업자	회수명령 기관 (지방청, 시·군·구)	영업자
행정처분	회수결과에 따라 감면처분 가능	감면처분 불가	-
회수사유	위해 발생 또는 위해 발생 우려		품질 결함 등
회수절차	회수지침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자율 (회수지침 참고)
회수공개	○	○	x

☑ 영업자 회수 :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 정부 회수 :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폐기처분 등)

- ▶ 정부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수명령 기관이 「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함

☑ 자율 회수

- ▶ 의무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 하는 회수



잠깐만!

- ◆ 영업자가 품질결함 등을 인지하여 관할기관에 자율회수 보고를 할 경우, 관할기관은 영업자 자율회수 사유를 검토하고,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관리
- 회수계획서, 회수결과보고서 등은 반드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회수 3등급에 준하여 일련의 회수 절차를 관리

04 | 회수대상 및 회수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18]에서 정한 식품등

1. 법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카드뮴·납·수은·메틸수은·무기비소 등 중금속,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곰팡이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바. 패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아.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주석, 포스파티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차.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카. 식품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또는 위생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타.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파.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폴리염화비닐(PCBs), 멜라민,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너.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더.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

러.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4.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금지한 원료·성분이 검출된 경우

5. 그 밖에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서 정한 회수 등급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 2, 3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국제암연구소(IARC) Group 1 물질 (벤조피렌, 다이옥신 등)	국제암연구소(IARC) Group 2A, 2B 물질(메틸수은, 니켈 등)	국제암연구소(IARC) Group 3 물질 (셀레늄, 툴루엔 등)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크로노박터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 바실루스 세레우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세균발육
패독소, 아플라톡신, 방사능, 부정물질, 멜라민, 무허가(신고) 제조·소분·수입,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비기한 미표시 등	중금속(비소, 납, 카드뮴 등), 잔류 농약·동물용의약품,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메탄올, 시안화물, THC, CBD, 에틸렌옥사이드, 프탈레이트, 니켈 등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기준 위반, 파툴린, 대옥시니발레논, 제랄레논, 비류, 주석, 암모니아성질소, 형광증백제, 2-클로로에탄올, 쇠파우 등

☑ 1등급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 식품등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 ①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에 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또는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 ② 「식품위생법」 제93조(벌칙)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 ③ 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서 정한 것 이외의 원료
- ④ 식품공전 ‘제1.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
- ⑤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동·식물
- ⑥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등
- ⑦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해야 할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 2)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1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포름알데히드,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다이옥신 또는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또는 크로노박터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패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아플라톡신 기준을 위반한 경우
- 6)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식품등에 금속성 이물(쇠가루 제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된 경우 (다만, 이물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8) 인체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
- 9) 부정물질(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 멜라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1)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 12)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 13) 「식품위생법」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사용 등 금지)을 위반한 경우
-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제3항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표시해야 할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②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 ③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5)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수입·기타 영업에 사용한 경우
- 16) 사료용 또는 공업용을 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
- 17) 영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소분·수입한 경우
- 18)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위의 1)부터 17)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 2등급

|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1)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 무기비소 등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캄필로박터제주니/콜리, 바실루스 세레우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3-MCPD (3-Monochloropropane-1, 2-diol)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농산물(콩나물 포함)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6)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오크라톡신A 또는 푸모니신 기준을 위반한 경우
- 8)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1) 프탈레이트 또는 니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2)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부터 11)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 3등급

|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3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 (페놀, 톨루엔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바륨, o-톨루엔설폰아미드 또는 폴리옥시에틸렌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파툴린, 데옥시니발레놀 또는 제랄레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식품조사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6)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
- 7) 주석, 암모니아성질소, 형광증백제, 포스파타제, 아질산이온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8) 식품등에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1등급 이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싯가루가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만, 이물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9) 기타이물 중 제조과정 중에서 혼입될 가능성과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
- 10) 「식품위생법」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총용출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1)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한 경우
-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3)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 부터 12)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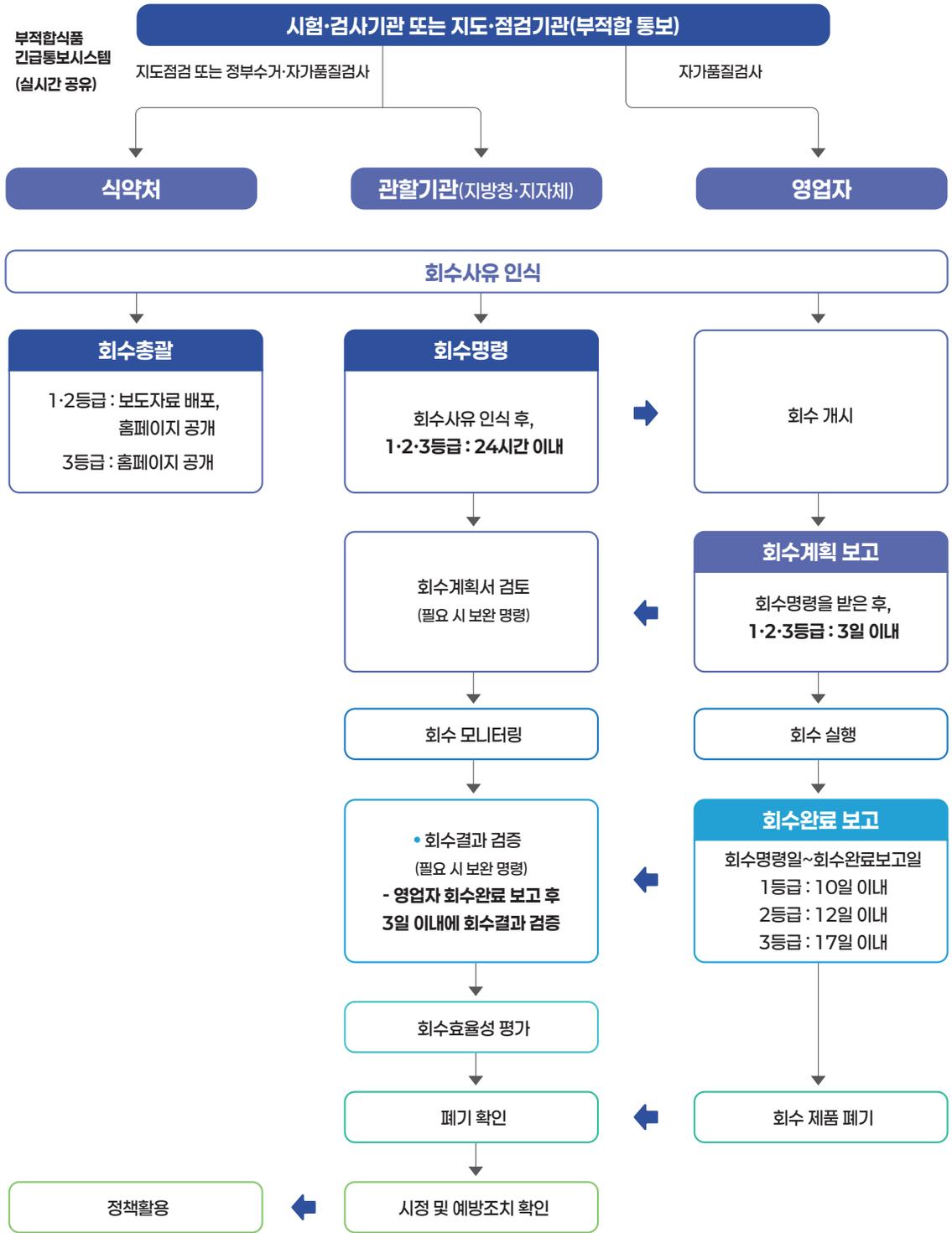


잠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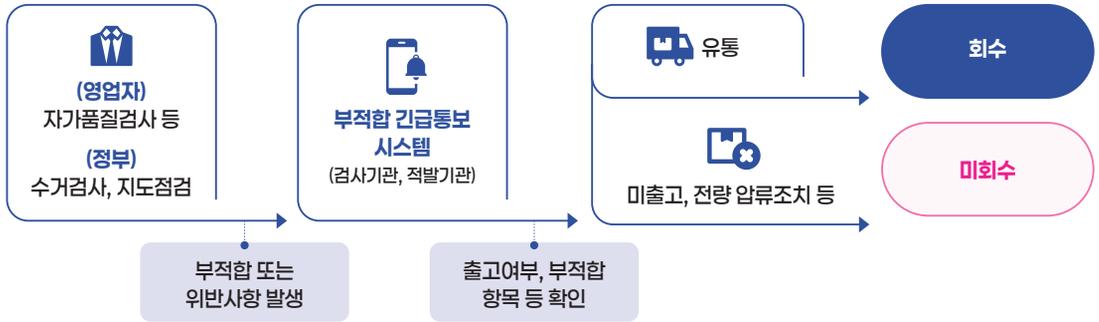
- ◆ 회수대상은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 18] ②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 명시된 항목이며, -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산가, 과산화물가, 리놀렌산, 내용량, 수분, 함량 부적합, 이물 중 단발성 이물* 등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이물 혼입 원인이 확인되어 동일한 이물이 다른 제품에는 혼입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

05 | 회수절차 및 관리



1. 부적합 내용 인식 및 회수 검토



- ✔ 영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신속히 압류 등 사전조치
 - * 거래처(유통단계)에서 보관 중인 물품은 관할지역은 직접, 관할지역 외는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압류
- ✔ 부적합 제품이 출고가 되지 않았거나, 전량 압류 조치, 소비기한 경과 등 경우 회수를 미 실시 할 수 있음
 - * 다만, 농·축·수산물은 시간 경과에 따라 품질 변화로 구매 이전과 상품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회수 미 실시 할 수 있음

시험·검사 기관 또는 지도·점검 기관

| 시험·검사 기관 : 정부수거 또는 자가품질검사 등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할기관 등에 부적합 사실 통보

| 지도·점검 기관 : 지도·점검 과정에서 회수 사유 적발한 경우,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할기관 등에 부적합 사실 통보

*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등록 시 반드시 해당제품 바코드 번호, 제품 사진(전면, 표시면) 등록

회수명령 기관

|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여 회수대상 여부 확인

| 부적합 제품의 출고 여부 및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을 파악하여 회수명령 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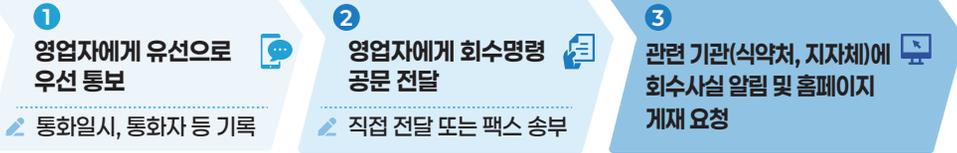
※ 부적합 제품이 출고된 상태이고 소비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재고량이 없더라도 소비자 보유분 반품 등을 위해 반드시 회수 실시

잠깐만!

- ◆ 관할기관에서는 긴급 통보된 사항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부적합 항목이 회수대상인 경우 신속한 판매 차단과 회수 조치를 하여야 함 (※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영업자에게 전화로 우선 통보)
- ◆ 부적합 제품이 소분제품인 경우, 원료제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에 부적합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조사 요청 (※ 원료제품 또는 수입제품 부적합 여부 등 확인하여 추가 조치)
- ◆ 부적합 원인이 원재료에서 기인된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부적합 여부 등 추가 조사

2. 회수명령

명령 절차



- ☑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를 개시하도록 조치
- ☑ (1·2·3등급) 24시간 이내

체크리스트 제공

- ☑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제공 및 회수 관리 철저
- * 정확한 유통재고량 산출 유도, 온라인 판매 시 온라인 유통물량의 회수 방법을 명시하도록 조치

회수명령 기관

회수 사유를 인식한 회수명령 기관은 영업자가 신속히 회수를 개시하도록 조치

- ① 우선 전화로 영업자에게 회수명령 통보(통화일시, 통화내역, 수화자 등 통화내용 기록)
- ②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 명령 내용 입력
- ③ 부적합 인식 후 24시간 이내 회수 영업자에게 회수명령 공문 통보
* 영업자에게 우선 전화 통보하여 즉시 회수제품 유통·판매중단하도록 하고, 직접 공문 전달, 전자우편(e-mail), 우편(등기), 팩스 송부
※ 체계적이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영업자용)(「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별지 제5호 서식)를 제공하여 영업자가 회수효율성 점검에 활용토록 지도
- ④ 관련 기관(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에 회수사실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잠깐만

- ◆ 회수대상 제품의 포장단위가 여러 개인 경우, 포장단위별 제품사진(주표시면, 정보표시면, 바코드 등) 확보
- ◆ 홈페이지 게재 요청을 받은 시·도에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전달

3. 위해식품 공표(위해식품 회수정보 공개)

위해식품 공표

- ✔ 「식품위생법」 제73조에 해당되는 경우 위해식품 공표 명령 실시
- ✔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반드시 명하여야 함
 - * 반드시 공표결과(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내용) 확인

홈페이지 공개

- ✔ 회수대상 식품의 제품명, 제조회사, 회수사유 등 공개
- ✔ 회수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회수 1·2등급 보도자료 추가 배포
 - * 식약처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에 해당제품 소비기한까지 공개

회수명령 기관

|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에 대하여 공표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함

- ①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품명, 제조회사, 회수사유 등 상세내역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

- 회수명령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요청을 받은 기관은 회수사실이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식약처는 회수명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에 회수사실을 게재하고 있으며, 회수 1·2등급과 3등급 중 취약계층(영·유아, 고령자 등)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은 보도자료 추가 배포

* 특수영양식품(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영업자

I 회수명령 기관으로부터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 사실을 공표

- ① **공표 방법**: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긴급회수문을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
- ② **공표 결과 통보**: 회수사실 공표 후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내용)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회수명령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

I 영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대상 식품등의 상세내역을 게재하거나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회수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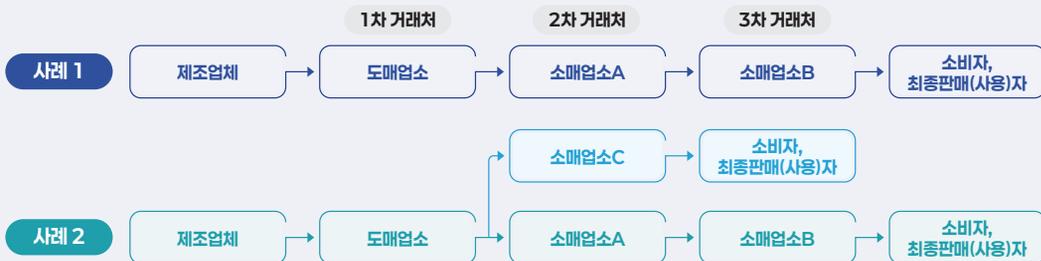
- 회수명령을 받는 즉시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판매처)에 회수사실을 신속히 연락하여 회수대상 식품등의 진열 및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각 거래처에 보관 중인 유통재고량을 파악한 후 반품토록 신속히 조치
 - * 판매업소 매장 내에 회수대상 식품등의 상세내역이 게시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판매업자는 회수사실 및 반품방법을 매장 내에 게시
- 인터넷 쇼핑몰,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수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섭취 중단 및 반품 요청
- 회수대상 식품의 상세 정보와 반품 방법 등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
 - ※ 회수사실 공지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후, 회수완료보고 시 첨부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



잠깐만!

- ◆ 영업자는 회수 발생 등에 대비하여 제품별로 유통경로, 각 유통단계별 거래처의 연락처, 소재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통·판매경로(판매처) 현황 자료 작성·보관
- ◆ 회수 발생 시 유통·판매경로(판매처)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거래처에 회수 사실을 알리고, 진열·판매 중단조치 및 보관중인 유통재고량을 파악하여 반품하도록 요청

(예시) 유통·판매 경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양식 및 예시

1. 긴급회수문 크기

▣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 5단 10센티미터 이상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 긴급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

2. 긴급회수문의 내용(예시)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예시) 000 과자

나. 제조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예시) 소비기한 2024. 4. 30.(제조일자 2023. 5. 1.)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수사유 : (예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예시)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예시) 000 제과

바. 영업자주소 : (예시) 00시 00구 00대로 123

사. 연락처 : (예시) 02-1234-1234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 ◆ 위해식품 회수정보 공개(공표)는 소비자(또는 판매자)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공개(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 ◆ 위해식품 회수정보 공개(공표)는 회수명령 기관의 별도의 명령이 없더라도 영업자 스스로 판단하여 공개(공표)할 수 있음

4. 회수계획 보고 및 타당성 검토

영업자

I 회수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보고

① 회수계획서 작성(「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제품내역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일자(소비기한), 생산량, 창고재고량 등 회수 대상 식품등의 정보를 기재
- 출고량(유통·판매현황)은 유통 경로에 따라 1차, 2차, 3차 등으로 구분하여 각 판매처의 업소명, 연락처, 업소별 판매량·유통재고량을 파악하여 작성
- 회수계획량은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잔존 소비기한, 평균 소비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신속한 회수를 위해 소비자 및 각 유통단계별 모든 거래처에 회수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각 거래처가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지 등을 회수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회수효율성 점검 계획 작성

② 회수계획 보고

- 회수계획서와 생산·판매 관련 서류(생산일지, 판매·거래기록 등) 등 첨부자료 제출
 - ※ 회수계획 보고 기한(등급별): 회수명령을 받은 후 (1·2·3등급) 3일 이내
- 회수계획을 기한내 보고할 수 없거나, 기제출한 회수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회수명령 기관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회수명령 기관

I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미흡 시 보완 명령

①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신속히 식약처장에게 통보

- ※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우선 입력

② 회수계획서와 함께 제출받은 생산·판매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영업자의 회수계획(회수계획량, 회수방법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회수계획 타당성 검토

- ◆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량(수입량), 창고재고량, 유통·판매현황(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별 출고량, 유통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
- ◆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회수계획량·회수방법·회수기간·회수 효율성 점검 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 검토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하고, 필요시 창고재고량 및 유통재고량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회수계획서 양식 및 예시

회 수 계 획 서

「식품위생법」 제45조, 제72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등에 대한 회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제품 내역	회수제품명(식품등 유형)	(예시) 000 과자(과자류)	
	제조일자(소비기한)	(예시) 제조일 2025.5.1.(소비기한 2026.4.30.)	
	수입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수입식품에 한함)	(예시) 해당없음	
	업소명 및 소재지	(예시) 000 제과(00시 00구 00대로 123)	
	생산(수입)량(kg)	(예시) 100 kg	
	창고 재고량(kg)	(예시) 25 kg	
	출고량(kg)*	(예시) 75 kg	
	거래처명	거래처별 출고량(kg)	거래처별 유통재고량(kg)
	(예시) 00 마트	25 kg	15 kg
	(예시) 00 유통	50 kg	19 kg
회수 계획	회수계획량(kg)	(예시) 34 kg	
	회수 사유	(예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	
	회수 방법	(예시) 거래처 재고량 반품 및 소비자 보관물량 회수	
	회수효율성 점검계획	(예시)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회수개시부터 종료까지 회수진행 상황 관리	
	회수완료 예정일	(예시) 2025.6.10.	

* 출고량은 판매·유통경로(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 별로 구분하여 작성

- ◆ 부적합제품(회수제품 및 창고보관제품) 처리 계획 : (예시) 폐기물처리업체 통해 폐기
- ◆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등
 - 소비자 : (예시)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사실 게재 및 소비자 개별 연락을 통해 회수사실 알림
 - 거래처 : (예시) 각 유통단계별 거래처에 전화, 이메일 통해 회수사실 알림, 해당제품 판매중지, 회수제품 반품 요청 및 판매처 매장에 회수사실 및 반품방법 게시 요청

2025년 6월 1일

보 고 인 000 제과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회수 실시 (회수 관리)

영업자

I 회수명령 기관에 보고한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실시하고, 회수진행 상황을 관리

- ① 회수 효율성 점검 :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 관리를 위해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회수진행 상황을 관리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회수정보가 소비자 및 각 유통단계별 거래처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회수정보를 제공받은 거래처는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진열·판매 중단 및 반품)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 시 보완대책 강구
-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관리를 위해 회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회수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 * 실제 운영 가능한 체계여야 하며, 가상의 회수상황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 실시

회수명령 기관

I 회수 완료 시까지 회수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수를 실시하는지 회수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시 보완 요청

- ① 회수상황 모니터링 :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회수진행 상황을 모니터링(「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영업자가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별로 신속히 회수사실을 통보하였는지, 통보받은 거래처는 진열·판매 중지,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
 - ※ 영업자에게 회수사실 통보 증빙자료(공문, 통화기록, 이메일 등) 요구 및 확인하고 거래처의 반품 등 회수조치가 미흡한 경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영업자 등 독려
- ② 회수 식품등 압류·봉인 조치
 - (회수영업자 보관 제품) 회수영업자가 보관중인 재고량(창고재고량 등)에 대해서는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이를 압류·봉인 조치
 - (거래처 보관 제품) 회수명령 기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 보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압류·봉인 협조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
 - * 압류·봉인 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회수영업자의 거래처에서 봉인해제를 요청하면 압류기관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 기관에 통보
- ③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회수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수거 검사 실시

6. 회수 결과 보고 및 검증

영업자

회수된 제품은 정상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

① 회수완료 보고서 작성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제품내역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일자(소비기한), 생산량, 창고재고량 등 회수 대상 식품등의 정보를 기재
- 회수내역에는 회수계획량, 실제 회수량, 회수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량을 기재
- 적극적인 회수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부적합제품(회수량 및 창고재고량) 폐기 등 처리 계획
- 부적합 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구체적인 이행계획 포함)

② 회수완료 보고

- 회수완료 보고서와 거래처 회수사실 공지 여부 증빙 자료(통화내역, 이메일 등), 반품 또는 회수 증빙자료(거래처 반품 서류 등) 등 첨부자료 제출
- 회수계획서에 설정한 회수완료 예정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수명령 기관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회수계획 변경 보고)

회수명령 기관

① 회수완료 보고서 검토

-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회수결과를 검증
- 거래처 회수사실 공지 여부 증빙자료(통화내역, 이메일 등), 회수 증빙자료(거래처 반품 서류 등) 확인하여 각 거래처별 유통 재고량이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실시
※ 회수완료 보고 검증은 회수제품 폐기 시점이 아닌 영업자 회수완료 보고 후 실시

② 회수제품 압류·봉인

- 실제 회수대상 제품 및 최종 회수량이 정확한 지 현장 확인
- 부적합 회수 제품의 유통·판매·사용 방지를 위해 폐기 전까지 압류 및 봉인 조치

③ 추가 회수 조치(보완 명령)

- 영업자 회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회수 등 조치 명령



7. 회수효율성 평가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회수명령 기관이 영업자 회수 완료 후 일련의 회수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했는지(신속성), 회수대상 제품을 적절하게 회수했는지(정확성)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신속성(35점)** : 거래처 회수사실 통보 소요시간,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회수기간, 회수완료 보고서 제출 소요 일수 등 회수 절차 이행의 신속성을 평가
- **정확성(65점)** : 회수계획량 산정의 정확성, 회수결과의 적정성,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회수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



잠깐만

◆ 회수등급별 회수 및 회수완료 보고 검증 기간

- 1등급 : 회수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회수 완료
- 2등급 : 회수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2일 이내 회수 완료
- 3등급 : 회수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7일 이내 회수 완료

※ 회수완료 보고 검증은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 결과에 대해 검증하여 미흡 시 추가 회수 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영업자 회수 완료 보고 후 3일 이내에 실시

회수원료보고서 양식 및 예시

회수원료 보고서

「식품위생법」 제45조, 제72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등에 대한 회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품 내역	회수제품명(식품등 유형)	(예시) 000 과자(과자류)
	제조일자(소비기한)	(예시) 제조일 2025.5.1.(소비기한2026.4.30.)
	수입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수입식품에 한함)	(예시) 해당없음
	업소명 및 소재지	(예시) 000 제과(00시 00구 00대로 123)
	생산(수입)량(kg)	(예시) 100 kg
	창고 재고량(kg)	(예시) 25 kg
	출고량(kg)	(예시) 75 kg
회수 내역	회수계획량(kg)	(예시) 34 kg
	회수량(kg)	(예시) 32 kg
	미회수량(kg)	(예시) 2 kg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예시) 자사 홈페이지 및 판매처 회수정보 지속 공개
- ◆부적합제품(회수제품 및 창고보관제품) 폐기 등 처리 계획 : (예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 주요 내용 : (예시) 살균공정 강화, 작업장 및 작업도구 살균·소독 실시, 종업원 위생교육 강화 등
 - 완료 예정일 : (예시) 2025. 6. 25.

2025년 6월 10일

보고인 000 제과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8. 회수 식품등의 폐기

영업자

회수 제품을 폐기할 경우 압류품은 회수명령 기관에서 봉인해제한 후 폐기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

① 폐기(소각, 매몰 등)

- 폐기 증빙자료(사진, 소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폐기 결과 제출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식용외 용도전환(사료, 산업용 등)

- 사료로 용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명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 전환(「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사료 등 용도 전환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

③ 수출국 반송(반출)

- 수입식품을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반송·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회수명령 기관에 반송·반출계획서와 수출계약서, 선하증권(B/L)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 반송·반출 완료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첨부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반송 결과 제출

회수명령 기관

영업자의 회수 제품 처리방법에 따라 현장 입회 등을 통해 처리결과 확인

① 폐기(소각, 매몰 등)

- 폐기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고, 영업자가 제출한 폐기 결과 자료 최종 확인
- ※ 폐기량이 소량으로 자체폐기하는 경우(음식물 쓰레기 배출, 자체 매몰 등)에도 입회하여 폐기 완료까지 확인
- * 유독·유해물질 함유 제품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자체 폐기를 금지하고 반드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 조치

② 식용외 용도전환(사료, 산업용 등)

-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용도 전환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를 확인
- ※ 「사료관리법」 제11조제2항(사료의 공정 등) 및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료 용도 전환 승인 불가
- * 사후관리 지역이 다른 행정기관 관할 지역인 경우 용도전환 승인과 동시에 사후관리 요청,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신속히 사후관리 후 요청 기관에 결과 통보

③ 수출국 반송(반출)

- 수출계약서, 선하증권(B/L)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송·반출 승인(봉인 해제)
- *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자료 확인하여 최종 반송 결과 확인



잠깐만!

- ◆ 영업자가 폐기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회수명령 기관에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법」: 부록3 참고

9. 시정 및 예방 조치

영업자

| 회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완료해야 함. 대규모 설비교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회수명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 가능

① 원재료가 회수 발생 원인인 경우

- 원재료 변경 또는 원재료 사전검사, 검수방법 등 개선

② 제조방법 또는 제조시설이 회수 발생 원인인 경우

- 제조방법 변경 또는 시설개수 등의 조치

- 종사자 위생관리 기준, 세척·소독관리, 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등 조치

③ 유통과정(제품 포장·운송방법 등)이 회수 발생 원인인 경우

- 제품 포장·운송방법 등 적정 여부 검토하여 포장 재질 변경, 취급 시 주의사항 문구 추가 기재 등 조치

회수명령 기관

| 영업자의 회수발생 원인,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①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② 영업자의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할 것을 명령

06 | 행정처분 기준



☑ 정부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업종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자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업종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자 회수 행정처분 감면기준

구분	행정처분 기준	감면내용
회수계획량의 4/5 이상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행정처분 면제
회수계획량의 1/3 이상 4/5 미만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	정지처분기간의 1/2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기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였음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07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이용 방법



1.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개요

1.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목적

- 부적합 제품 및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부적합 제품 및 회수 제품 관리에 활용
- 부적합 제품 및 회수대상 제품의 실시간 정보 공개 및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여 판매단계에서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차단 조치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 식약처가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부적합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전송하면, 해당 제품 정보(바코드 번호 등)가 판매업체 매장의 POS 단말기로 전파되어 판매단계에서 위해식품등이 판매되는 것을 차단

2.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방법(시험·검사기관 또는 지도·점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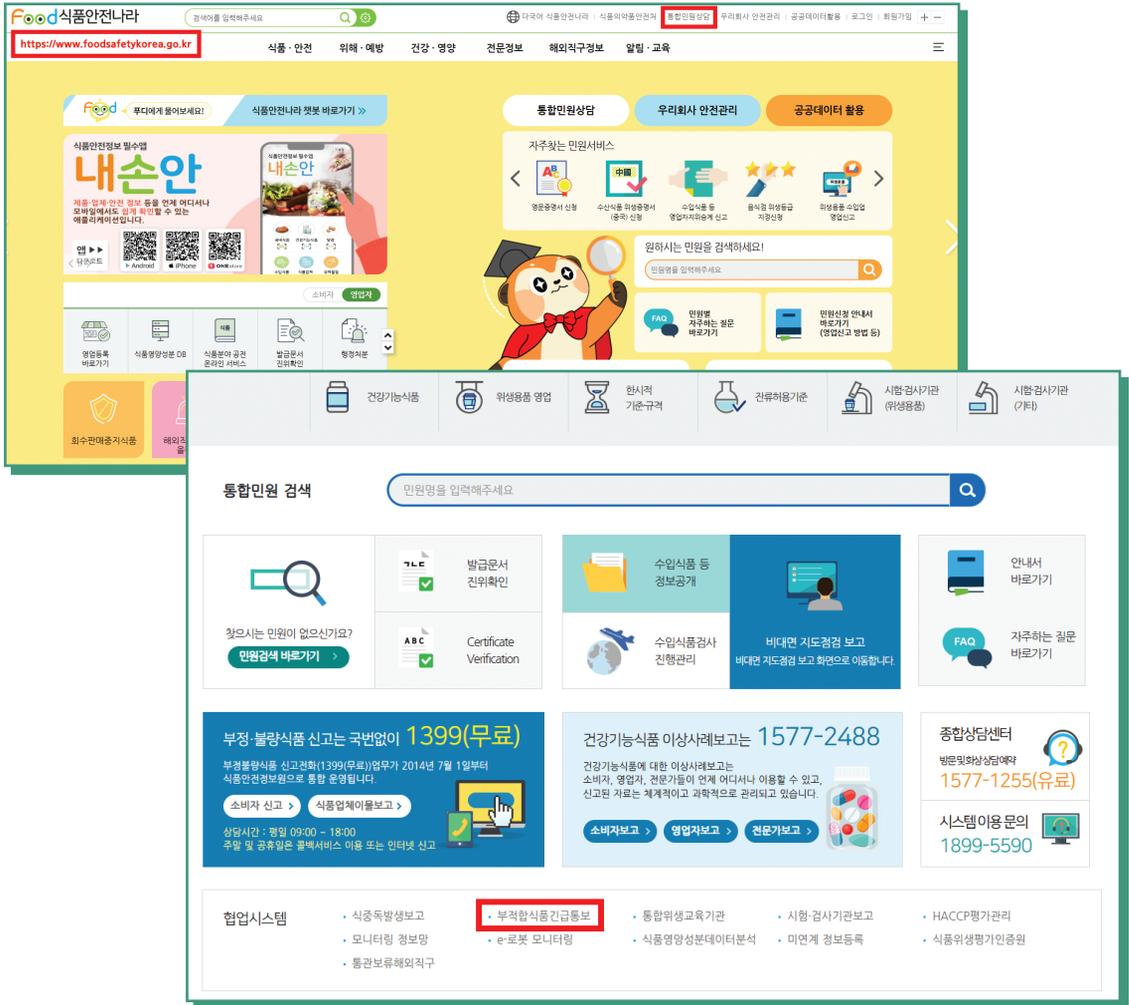
- 정부 지도·점검 기관 또는 시험·검사 기관



-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여 '통합사후관리, 부적합식품긴급통보' → '부적합식품긴급통보/회수폐기' → '부적합식품긴급통보등록'에 부적합 내역 입력
- ※ 사전에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회원가입(소속기관, 휴대폰 번호 등 정확히 기재) 필수

- 민간 시험·검사 기관(자카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 등)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의 '통합민원상담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에 접속하여 '부적합식품 긴급통보등록'에 부적합 내역 입력



잠깐만!

◆ 부적합 제품 등록 시 훼손되지 않은 제품 이미지(전면, 표시면 등)와 바코드 번호 입력 철저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여 대국민 공개

*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위반식품 및 업체정보 > 회수·판매중지

3.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 조치사항(관할 지자체 등)

- 영업소 소재지 관할기관(지방청, 지자체)은 부적합 내용 확인하여 신속한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
 - ※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부적합긴급 통보 등록과 동시에 관할기관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및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
- 관할기관은 부적합 통보받은 제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 여부 결정 및 신속한 회수 관리

2. 부적합 식품 정보 등록(시험·검사기관 또는 지도·점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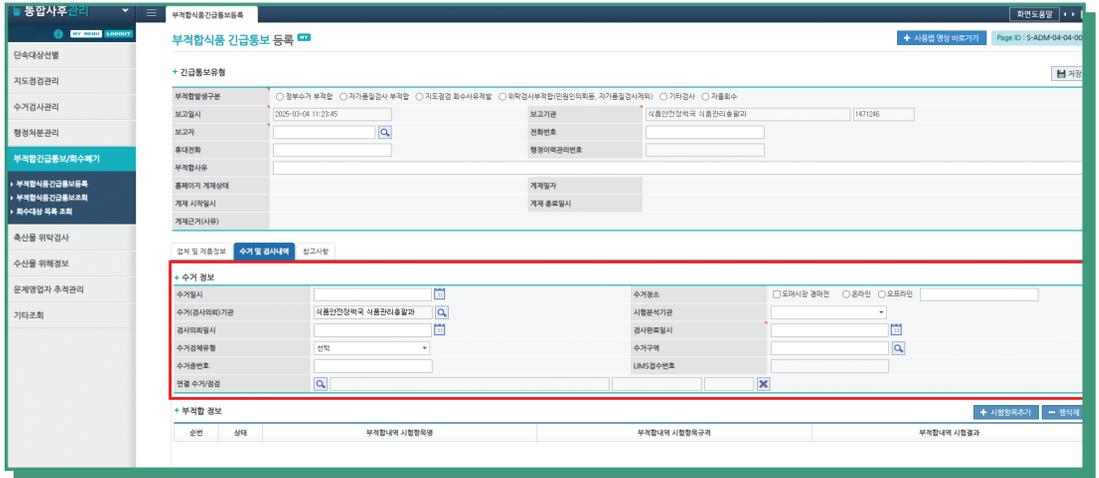
1. 부적합긴급정보/회수폐기 > 부적합식품긴급정보등록 선택

2. 부적합발생구분 선택: 정부수거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등

3. [업체 및 제품정보], [수거 및 검사내역], [참고사항] 탭에 해당 정보 입력

○ 업체 및 제품정보

- **제품명**: 제품명 우측에 돋보기를 클릭하여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품목보고되어 있는 제품명을 입력
- **보관방법**: 부적합 제품의 보관방법(실온/냉장/냉동) 확인 후 반드시 입력
- **제조일자 또는 유통/소비기한**: 부적합 제품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소비기한 입력
 - ※ 유통/소비기한 등이 다수일 경우 유통/소비기한(제조일 기준)란에 해당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입력 (예시: 2024.10.13.~2025.2.4.)
- **바코드 번호**: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 번호 반드시 입력
 -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바코드 번호 입력란 우측의 '없음'에 체크하고, '업체 정보'란에 사업자 번호 기재
- **업체 정보**: 부적합 제품 제조(소분)업체 입력
 - ※ 관련업소 정보에는 소분제품의 경우 원료 제품 제조(수입)업체, 유통전문판매업소 등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입력
- **제품 이미지**: 부적합 제품의 전면, 표시면 등 제품의 표시사항, 바코드 번호, 유통/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JPG 형태의 파일 등록
 - ※ 제품 사진은 소비자 공개용이므로, 포장을 뜯기 전 훼손되지 않은 사진을 등록



○ 수거 및 검사내역

- 수거기관, 시험분석기관, 부적합 시험항목명 및 시험결과 등 정확히 입력
- 수거장소 : 반드시 온라인/오프라인 선택 후 구체적인 수거장소 정확히 입력

○ 참고사항

- 하단(비공개용) : 부적합 등록 제품과 관련하여 관할기관(지방청, 지자체)에 공유가 필요한 정보(지도·점검, 시험·검사 특이사항 등) 입력

Q 제품명 검색이 안될 경우

- A. 식품소분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 '제품명 검색' 기능으로 제품명 입력 불가
 ▶ '국내외구분'에 미신고를 체크하면 '제품명'란이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됨

Q 업소명 검색이 안될 경우

- A.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업체의 경우 '업소명 검색' 기능으로 업소명 입력 불가
 ▶ 관할기관 등에 확인하여 모든 항목을 수동으로 입력

Q 품목보고번호 등으로 검색한 제품명이 제품에 표시된 제품명과 다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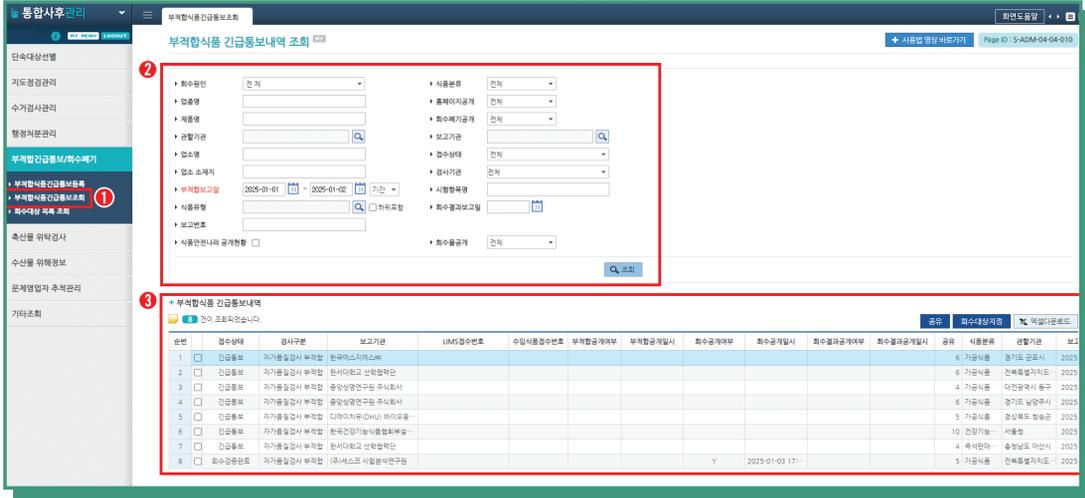
- A.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기관 등에 확인하여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을 입력

Q 동일한 제품이지만 포장단위가 여러 종류일 경우

- A. 바코드가 없는 경우, '포장단위'란에 해당 포장단위를 전부 입력(예시 : 100g, 200g) 바코드가 있는 경우 (포장단위마다 바코드가 다른 경우), 포장단위별로 부적합제품을 각각 등록. 이때 바코드 번호, 제품이미지, 포장단위 입력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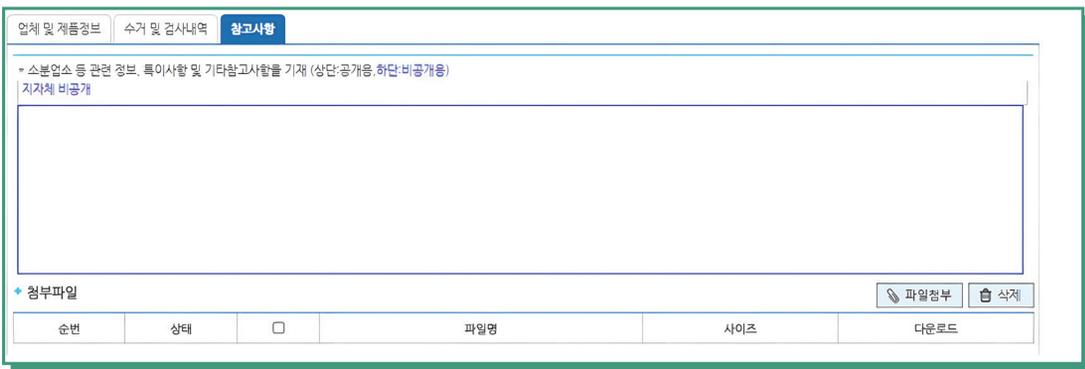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바코드번호 등을 이용해 회수식품 판매를 차단하므로, 바코드가 다른 제품은 동일한 품목일지라도 별개의 권으로 각각 등록 필요

3. 부적합 식품 정보 조회(관할 행정기관 등)



1. 부적합긴급통보/회수폐기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조회 선택
2. 상단의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3. 하단에 조회된 부적합 목록 중 특정 건 더블클릭 ➔ 세부 정보가 팝업으로 표시

3-1. 회수 대상이 아닌 경우



1. 부적합식품긴급통보조회에서 팝업으로 표시된 세부 정보 화면의 [참고사항] 탭 선택
2. 하단 '지자체 비공개' 메모란에 회수 미실시 사유* 입력
 - * 회수 미실시 사유: 전량 미출고, 전량 압류조치, 소비기한 경과 등
3. 회수 미실시 근거 자료(출고 여부조사, 출장복명서 등)를 첨부파일로 등록

5. 회수명령(회수관리 기관 등)

회수폐기관리 HY
Page ID : S-ADM-04-04-040

1
업소

홈페이지게재요청
코리아넷전송
회수취소
출력
X 닫기

업소명		회수단계	회수폐기완료	코리아넷전송일시	2025-01-17 17:32
-----	--	------	--------	----------	------------------

+ 업소정보

업소조회구분	인허가업소	업종	식품소분업	업소명	전화번호
명업신고번호		인허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장길

+ 제품정보

식품유형	조미건여포	수거증번호	제품명	첨부이미지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20260529	수입유무
바코드 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유통/소비기한(제조일기준)		국가
제조번호		수입일자		생산량
포장단위	20g, 40g, 100g, 150g, 200g, 3	제품특이사항		수입량

2
+ 홈페이지 공개정보
저장

※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만 입력해주세요.

제조일자		바코드 번호		유통/소비기한	2026-05-29
사업자등록번호	127-86-62663	포장단위	20g, 40g, 100g, 150g, 200g		
검사(단속)기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회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소 예방관리과		
홈페이지 게재상태	Y	개제근거(사유)	소비기한 연장 표시		
공개 시작일자	2025-01-17	공개 종료일자	2026-05-29	공개일자	498

3
회수명령

회수계획
회수실적
회수결과
회수제품폐기

+ 회수명령

회수등급	1등급	회수명령일시	2025-01-17	회수원인	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
회수명령자		회수명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	회수검토확정일시	2025-01-17
회수구분	<input type="radio"/> 식45조 <input checked="" type="radio"/> 식72조 <input type="radio"/> 건10조 <input type="radio"/> 건30조 <input type="radio"/> 자율 <input type="radio"/> 축산물	회수통보방법	직접전달		
공개 시작일시	2025-01-17 17:30	생산량(Kg)	19.91	수입량(Kg)	
공개 종료일시	2026-05-29 23:59	회수사유(공개용)	소비기한 연장 표시		
고객센터번호	000-000-0000(오전9시~오후)	홈페이지URL	작성 예 ==> www.dddd.ff.kr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작성 예 ==> 섭취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4
회수명령

1. 회수대상 목록 조회에서 팝업으로 표출된 세부 정보(관리 화면)의 제품정보 등 확인

2. '홈페이지 공개정보'란의 입력 정보 확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부적합식품 조회' 화면에서 수정*

* 부적합 제품 정보에 입력된 사항이 회수관리 화면의 제품정보, 홈페이지 공개정보에 자동으로 입력

3. [회수명령] 탭에 회수등급, 생산량, 회수사유 등 입력 후 '회수명령' 클릭

○ 회수등급: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등급 선택

○ 회수원인, 회수구분*: 자가품질검사, 정부수거·지도점검 등 해당사항 선택

* 회수구분: 자가품질검사는 '식45조', 정부수거·지도점검은 '식72조' 선택 등

○ 공개 종료일시: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유통)기한

Q. 회수대상 지정을 잘못 했거나, 등록된 회수 명령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A. 부적합 항목이 회수 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합 제품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전량 압류 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경우 등 회수대상이 아님에도 회수대상으로 잘못 지정하여 회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관할기관이 임의로 '회수취소'를 하지 말고 식약처 본부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회수철회 알림' 공문 등 조치

* 식품관리총괄과(가공식품등), 축산물안전정책과(축산물), 건강기능식품정책과(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안전정책과(농수산물), 수입유통안전과(수입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Q. 회수폐기관리화면의 '홈페이지재요청' 메뉴는 무엇인가요?

A.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식약처 담당자가 식약처 누리집(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할 때 사용하는 기능

Q. 회수폐기관리화면의 '코리안넷전송' 메뉴는 무엇인가요?

A. 식약처 담당자가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기능. 전송된 정보는 각 유통업체로 전파되어 판매단계에서 회수 대상 식품의 판매를 차단

6. 회수계획 정보 등록(회수관리 기관)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registering recall plans. It is organized into three numbered sections:

- Section 1: Recall Plan Details** - A form with fields for '제출일시' (Submission Date: 2025-01-17), '제출방법' (Submission Method: 서면제출), '수입신고번호' (Import Declaration No.), '생산(수입)량(Kg)' (Production/Import Qty: 19.91), '참고재고량(Kg)' (Reference Inventory Qty: 8.7), '회수계획량(Kg)' (Recall Plan Qty: 11.21), '회수사유' (Reason: 소비기한 연장 표시), '판매(출고)량(Kg)' (Sales/Dispatch Qty: 11.21), '회수방법' (Recall Method: 택배 등 영업소로 반품 조치), '거래처현황' (Merchant Status), '처리방법' (Disposal Method: 폐기처분(사료) 등), '회수기간' (Recall Period: 2025-01-17 to 2025-01-24), '회수공표방법' (Recall Announcement Method: 소비자 유선통보, 온라인 판매업체 회수사실 공표), '거래처 유선통보', and '승인일자' (Approval Date: 2025-01-17). A '회수계획승인'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 Section 2: Sales History Table** - A table with columns: '순번' (Serial No.), '상태' (Status), '선택' (Select), '업소명' (Business Name), '판매량(Kg)' (Sales Qty), and '재고량(Kg)' (Inventory Qty).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showing '데이터가 없음' (No data).
- Section 3: Attachments Table** - A table with columns: '순번' (Serial No.), '상태' (Status), a checkbox, '파일명' (Filename), '사이즈' (Size), and '다운로드' (Download).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1. [회수계획] 탭에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서 내용 입력
2. 판매내역 란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서 상의 출고량 세부 내역 입력
3.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서, 생산 및 판매 관련 증빙자료 등은 첨부파일로 등록
4. 회수계획서 등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회수계획승인' 버튼 클릭

7. 회수실적 정보 등록(회수관리 기관)

회수실적												
순번	상태	계획시작일	생산량(Kg)	수입량(Kg)	계고량(Kg)	회수계획량(Kg)	회수일자	회수량(Kg)	회수실적(%)	미회수량(Kg)	실적등록일	실적등록자
1	<input type="checkbox"/>		106.32		43.8	60	2025-02-10	56.88	95	3.12	2025-02-11	30066370

1. [회수실적] 탭에 회수기간 중 회수내역 입력하여 회수실적 관리
2. '행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일자별로 회수실적을 입력하여 관리 가능

8. 회수결과 정보 등록(회수관리 기관)

1 회수명령 회수계획 회수실적 회수결과 회수제출폐기
5 회수효율성평가표작성 저장 4 회수결과승인

제출일시: 2025-02-11 31

수입신고번호:

회수실적(%): 95

미회수량조치계획:

폐기등사후처리계획:

재발방지대책:

승인일자: 2025-02-11 31

제출방법: 서면제출

개선완료예정일자: 31

판매(출고)량(Kg): 61.2

회수량(Kg): 56.88

회수계획량(Kg): 60

미회수량(Kg): 3.12

2 회수결과검증
3 회수검증완료

검증일자: 2025-02-11 31

검증내용:

미흡사항:

조치사항:

1. [회수결과] 탭에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완료 보고서 내용 입력
 - 제출일시: 영업자가 회수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입력
2. 회수결과 검증: 영업자 회수완료 보고에 따른 서류 및 현장검증 결과 입력
 - 검증일자: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결과에 대해 검증을 완료한 날짜 입력
3. 회수결과 승인: 회수결과검증 후 영업자 회수완료 보고에 대한 최종 승인
 - 승인일자: 영업자 회수결과를 검증 후 최종 회수결과를 승인한 날짜를 입력
4. 회수효율성평가표작성 클릭하여 회수 전반에 대한 회수효율성을 평가

9.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 등록(회수관리 기관)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HY
Page ID : S-ADM-04-04-041

저장
출력
X 닫기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 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회수구분	유통/소비기한	20260119
	회수기간	회수등급	3등급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결과	생산량(Kg)	판매량(Kg)	보관량(Kg)	회수량(Kg)	회수실적(%)
	106.32Kg	61.2Kg	43.8Kg	56.88Kg	95%

구분	평가항목	점수
	항목상세	
	배점기준	
1. 신속성(35점)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소요일수 회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건별 판매 중단 등 요청 소요 일수 (배점:15) 24시간 이내 15점, 48시간이내 10점 72시간이내 5점 72시간 초과 0점	15
	1-2.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회수명령일로부터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소요 일수 (배점: 5) 24시간 이내 5점 48시간 이내 3점 72시간 이내 1점 72시간 초과 0점	5
	1-3. 회수기간 준수 여부 회수계획서상의 회수 기간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배점:5) 회수기간내 완료 5점 회수기간의 50%이내 초과 3점 회수기간의 50%이상 초과 0점	5
	1-4. 회수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회수종료 후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소요 일수 (배점:5) 2일 이내 5점 2일 이상 0점	5
	1-5. 회수사실 공지 여부 회수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5) 있음 5점, 없음 0점	5

1. [회수결과] 탭의 회수효율성 평가표 작성을 클릭하면 평가표가 팝업 화면으로 표시

2. 상단의 제품정보 및 회수결과 확인

3. 회수효율성 평가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평가자의견 및 평가일자 입력

○ **신속성(35점)** : 거래처 회수사실 통보 소요시간, 회수계획서 보고기한, 회수기한 준수여부 등 회수 절차 이행의 신속성을 평가

○ **정확성(65점)** : 회수계획량 산정의 정확성, 회수결과의 적정성,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회수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

10. 회수제품폐기 정보 등록(회수관리 기관)

회수명령
회수계획
회수실적
회수결과
회수제품폐기

+ 회수결과

회수율공개취소
저장
회수폐기완료
회수폐기완료취소
새로연계
결재기안문작성

제출일시	2025-02-11 31	제출방법	서면제출	개선완료예정일자	31
수입신고번호		회수율공개여부	공개함	회수율공개일시	2025-02-13 15:24:13 31
생산량/수입량 (Kg)	106.32	판매(출고)량(Kg)	61.2	회수계획량(Kg)	60
회수실적(%)	95	회수량(Kg)	56.88	미회수량(Kg)	3.12

+ 폐기내역

폐기결과	폐기(소각,매몰등)	폐기일자	2025-02-11 31	폐기량(Kg)	100.08
입회공무원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입회공무원명		입회공무원 직급명	

+ 첨부파일

파일정보
삭제

순번	상태	파일명	크기(Byte)	조회수
1	<input type="checkbox"/>	회수완료보고서_20250212131349.pdf	828,799	1
2	<input type="checkbox"/>	출장결과보고서(회수검증, 회수효율성평가, 폐기)_ pdf	4,376,206	1

1. [회수제품폐기] 탭에 회수제품 폐기 결과 입력
2. 상단의 회수결과 확인
3. 폐기내역에 폐기일자, 폐기량, 입회공무원 등 폐기정보 입력
4. 회수완료보고서, 폐기내역서 등 파일 첨부
5. 회수폐기완료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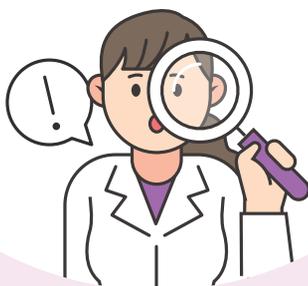
Q. 기 입력한 회수계획량·생산량·회수량 등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A. 회수관리 화면에 회수명령, 회수계획, 회수실적, 회수결과, 회수제품폐기 입력은 전단계 입력을 완료해야 순차적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활성화되며, 기입력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 본부 담당부서의 승인이 필요

* 식품관리총괄과(가공식품등), 축산물안전정책과(축산물), 건강기능식품정책과(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안전정책과(농수산물), 수입유통안전과(수입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Q

자주 물어보는
질문



08 |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안내서 > 공무원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수대상 제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위반식품 및 업체정보 > 회수·판매 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 휴대폰으로 SMS 등을 통해 회수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회수대상 제품의 식약처 누리집 공개 기준과 공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회수 대상 제품은 회수등급에 구분 없이 모든 회수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회수 1, 2등급은 추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4. 1차, 2차, 3차 거래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 1차, 2차, 3차 거래처는 영업자가 제품을 생산(수입, 소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과정 각 단계별 거래처를 말합니다.
- ◆ 1차 거래처란 제품을 생산(수입, 소분 포함)한 영업자에게 직접 식품을 구입한 거래처를 말하며, 2차 거래처는 1차 거래처에게 식품을 구매한 거래처, 3차 거래처는 2차 거래처에게 식품을 구매한 거래처를 의미합니다.
 - ※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의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자는 1차 거래처가 아니고 식품제조업자와 동등한 회수영업자에 해당

5. 영업자 자기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회수를 해야 하나요?

- ◆ 자기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회수해야 하며, 관할기관은 영업자가 성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 자기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 관할기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유통 중인 회수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수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6.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판매업자 등 제3자가 '참고용'으로 의뢰한 제품이 부적합한 경우 회수를 해야 하나요?

- ◆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영업자가 아닌 제3자가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만으로 회수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관할기관의 수거·검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7. 부적합 판정된 제품(1차)을 원료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2차)을 생산·판매했을 경우 두 제품 모두 회수를 해야 하나요?

- ◆ 부적합 판정된 제품(1차)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 등을 해서는 안됨
- ◆ 1차 제품의 부적합 사실을 모르고 2차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2차 제품의 회수 여부는 1차 제품의 부적합내용과 2차제품의 기준·규격 설정 여부,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8.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판매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할 경우, 회수 주체는 누구인가요?

- ◆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 모두 회수 주체에 해당되며, 상호 협력하여 회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둘 중 하나가 소재지 관할기관에 회수계획 보고를 하고 회수할 경우, 다른 영업자는 추가로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연구사업(모니터링 사업 포함) 과정 중 유통 중인 식품등을 수거·검사하여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회수를 해야 하나요?

- ◆ 식품위생감시원이 검체를 수거했고,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항목이 회수 대상에 해당되면 회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닌 자가 검체를 수거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주관부서에서 관할기관(지방청, 지자체)에 즉시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이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부적합 판정 및 회수사유 인식 시점에 유통·판매되지 아니하고 전량 보관중인 경우에도 회수명령을 해야 하나요?

- ◆ 회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한 제품 전량이 출고되지 아니하고 영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이 경우 해당제품이 출고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반드시 압류·봉인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11. 회수대상 제품 중 일부가 회수 개시 시점에 이미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체를 회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유통·판매도 불가하고,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회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사유 적발 시점에 이미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제외하고 회수대상을 산출하면 됩니다.
- ◆ 예를 들어,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인 제품에 대해 2024.7.1. 회수사유를 적발하였고, 해당 제품이 2024.1.1. ~ 2024.6.30까지 총 1,000kg이 생산(2024.1.1. ~ 2024.4.1. 기간 중에는 300kg 생산)되었다면 적발 시점에 이미 소비기한이 경과한 300kg을 제외한 700kg을 회수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재고량 등을 회수계획량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12. 회수지침에서 정한 회수 등급별 회수완료 기한 내에 반드시 회수를 완료해야 하나요?

- ◆ 회수등급별 회수완료 기한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신속한 회수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복잡한 유통·판매 경로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기한 내 회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제출한 회수계획서와 별도로 회수완료예정일을 수정한 회수 계획서를 다시 제출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 회수 완료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회수를 중단하거나 회수 완료 보고를 해서는 안 됨

13. 영업자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요?

- ◆ 자가품질검사 결과만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 또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회수해야 하나 회수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미(허위)보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14. 영업자가 회수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나요?

- ◆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등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른 영업자 회수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규정에 의거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량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 회수계획량의 4/5 이상 회수한 경우 : 행정처분 면제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 4/5 미만 회수한 경우 : 행정처분 감면
- ◆ 하지만,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등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에 따른 정부 회수의 경우에는 회수실적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영업자가 경미한 사유로 자율회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영업자가 회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품질결함 등의 사유로 자율적으로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할기관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관할기관의 감독하에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관할기관은 영업자가 보고한 자율회수 사유를 반드시 검토하여 위해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회수계획서, 회수완료 보고서 등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회수 3등급에 준하는 절차대로 회수관리를 해야 합니다.

16.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 부적합 회수식품의 신속한 판매차단을 위하여 민·관 협력시스템인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읽힐 때 회수대상 제품의 바코드 정보 등과 일치하면 판매가 차단되게 됩니다.
- ◆ 판매업체는 판매 차단된 회수 제품과 동일한 제품(제품명, 제조업체,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을 모두 선별하여 회수 영업자(제조업체 등)에게 신속히 반품 조치하고, 판매 차단을 해제하면 됩니다.

첨부

[첨부 1]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첨부 2] 행정대집행법



[첨부 1]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등록번호
지침서-0030-03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공무원 지침서)

2025. 2.

— 제1장 총칙 —

1.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해식품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과 영업자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등

「식품위생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을 말한다.

나. 회수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 회수등급

회수대상 식품등을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등급을 말한다.

라. 회수실적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text{회수실적(\%)} = (\text{회수량} / \text{유통재고량}) \times 100$$

마. 회수량

회수계획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

바. 회수계획량

회수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가 당해 제품의 유통경로, 소비기한, 소비량, 평균 소비주기를 고려하여 조사 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

사. 회수 영업자

회수대상 식품등을 제조·가공, 유통·판매, 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를 말한다.

아. 유통재고량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text{유통재고량} = \text{출고량} - \text{소비량}$$

자. 출고량

회수 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와 수입식품등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진열중인 유통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text{출고량} = \text{유통재고량} + \text{소비량}$$

차. 생산(수입)량

회수대상 식품등과 동일한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생산(수입)량 전체를 말한다.

$$\text{생산(수입)량} = \text{창고재고량} + \text{출고량(유통재고량} + \text{소비량)}$$

카. 창고재고량

회수 영업자가 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수입식품등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타. 소비량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

파. 회수명령 기관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리는 기관을 말한다.

하. 회수효율성 점검

1차, 2차, 3차 등 각 유통단계의 거래업체에 회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생산량·출고량 유통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했는지 및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회수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거. 회수효율성 평가

회수명령 기관이 영업자 회수 완료 후 일련의 회수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신속성), 계획된 회수량 등이 정확하게 회수되었는지(정확성)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회수의 종류, 대상 및 등급 —

1. 회수의 종류

가. 의무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한 회수

나. 자율회수

의무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

2. 회수대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제1항 및 제72조(폐기처분등)제3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사용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식품등

나.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등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2항, 제37조(영업허가 등)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제3항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규정을 위반한 식품등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라. 기타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수등급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 2, 3 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1등급

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 식품등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 ①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에 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1 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또는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 ② 「식품위생법」 제93조(벌칙)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설피, 사리풀
- ③ 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서 정한 것 이외의 원료
- ④ 식품공전 ‘제1.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
- ⑤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동·식물
- ⑥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등
- ⑦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해야 할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1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포름알데히드,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다이옥신 또는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또는 크로노박터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패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아플라톡신 기준을 위반한 경우

6)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식품등에 금속성 이물(씻가루 제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된 경우(다만, 이물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8) 인체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

9) 부정물질(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 멜라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1)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 12)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 13) 「식품위생법」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사용 등 금지)을 위반한 경우
-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제3항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표시해야 할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②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 ③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5)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수입·기타영업에 사용한 경우
- 16) 사료용 또는 공업용을 식품 제조·가공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
- 17) 영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소분·수입한 경우
- 18)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위의 1)부터 17)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나. 2등급

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1)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 무기비소 등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캄필로박터제주니/콜리, 바실루스 세레우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3-MCPD (3-Monochloropropane-1, 2-diol)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농산물(콩나물 포함)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6)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오크라톡신A 또는 푸모니신 기준을 위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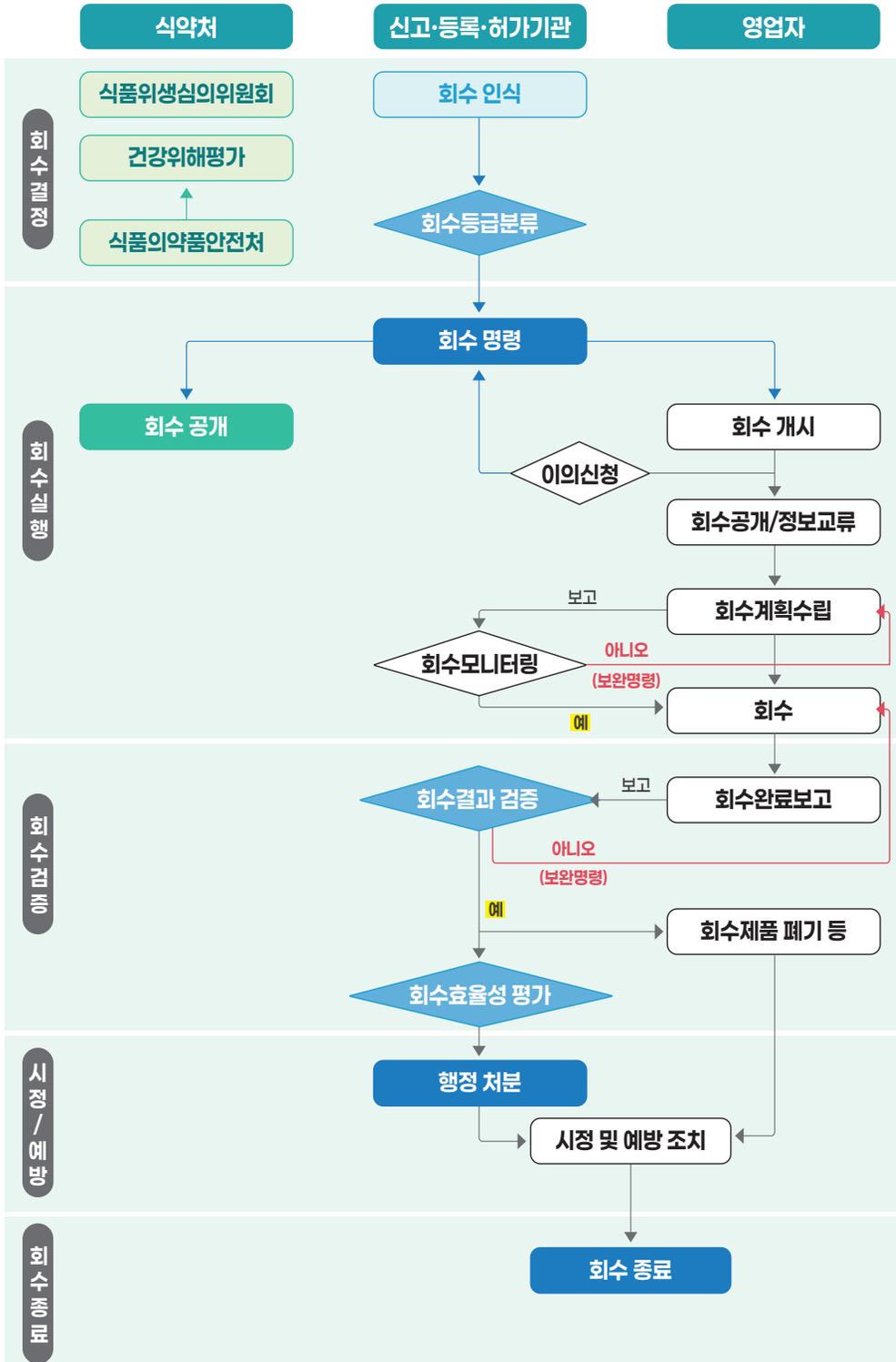
- 8)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1) 프탈레이트 또는 니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2)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부터 11)항목과 동등 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다. 3등급

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3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페놀, 톨루엔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바륨, o-톨루엔설폰아미드 또는 폴리옥시에틸렌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파툴린, 데옥시니발레놀 또는 제랄레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식품조사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6)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
- 7) 주석, 암모니아성질소, 형광증백제, 포스파타제, 아질산이온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8) 식품등에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1등급 이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씻가루가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만, 이물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9) 기타이물 중 제조과정 중에서 혼입될 가능성과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
- 10) 「식품위생법」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총용출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1)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한 경우
-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자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3)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 부터 12)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 제3장 회수절차 —



1. 회수결정

가. 회수인식

1)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시험·검사 기관)

가) 시험·검사 기관은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지체 없이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통보 후 관련기관에 공문 시행

※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의뢰기관, 영업허가등록·신고 기관 등

나) 회수 등 신속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은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적합 내역 확인

2) 지도·점검 결과 회수사유 적발 시 조치사항(지도·점검 기관)

가) 지도·점검 기관은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우선 전화로 관할 행정기관(영업허가등록·신고 기관)에 신속히 통보한 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통보 및 관련기관에 공문 시행

※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허가등록·신고 기관 등

나) 회수 등 신속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은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적합 내역 확인

나. 회수등급 분류

1) 회수명령 기관은 부적합식품 긴급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회수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회수등급을 분류

2)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대상 여부 및 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명령 기관으로부터 회수대상 여부 및 등급분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그 내용을 검토(필요 시 '건강위해평가'를 실시)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결과 통보

4) '건강위해평가'에서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등급 결정

다. 회수명령

1) 회수명령 절차

가) 회수 영업자가 신속히 회수를 개시하도록 회수명령 내용을 회수 영업자에게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통화일시, 통화내역, 수화자 등 전화통화 내역 기록

나) 회수등급별 회수명령 통보방법에 따라 회수등급별 조치내용을 담은 회수명령을 신속히 회수 영업자에게 공문 통보

※ 관할행정기관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영업자용)(별지 제5호 서식)'를 제공하여 영업자가 회수효율성 점검에 활용토록 지도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도(시·군·구)에 회수사실 통보 및 회수 정보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2) 회수명령 통보방법 및 시한

가) 1·2·3등급 : 회수명령 기관은 부적합식품 긴급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회수 영업자에게 공문 직접 전달 또는 우편(등기), 전자우편(e-mail), 팩스 송부

※ 팩스 송부 시 전송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회수실행

가. 회수개시

회수는 회수 영업자가 회수명령 기관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회수명령을 최초로 통보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나.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1) 회수공개

가) 행정기관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품명, 제조회사, 회수사유 등 상세내역을 자체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 위해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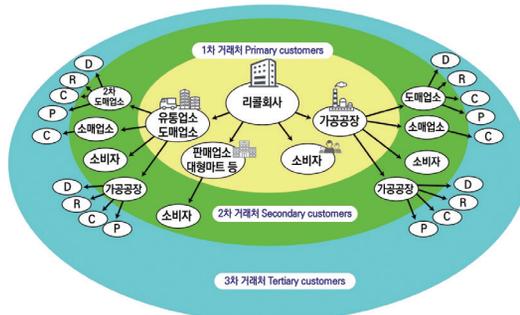
나) 회수 영업자

- ① 회수 영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대상 식품등의 상세내역 및 반품방법 등을 게재하거나 전화, 전자우편(e-mail), 팩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회수 영업자는 거래업소 매장 내에 회수대상 식품등의 상세내역이 게시될 수 있도록 거래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거래업자는 소비자들이 회수대상 식품등을 반품할 수 있도록 회수사실 및 반품방법을 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개별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수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

- 가) 모든 영업자는 회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품의 유통경로, 각 유통단계별 거래처의 연락처, 소재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나) 회수 영업자는 회수명령을 받는 즉시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판매처)에 회수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 회수대상 식품등의 진열 및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각 거래처에 보관 중인 유통재고량을 파악한 후 반품토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다) 회수 영업자는 각 유통단계별로 회수사실을 전파한 일시 및 시간, 통화자, 통화내용 등 상세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정보교류(Recall Communication) 예시도】



D: 유통 · 도매업소 R: 소매업소 C: 소비자 P: 가공공장

다. 회수계획 보고

1) 회수계획서 작성

회수 영업자는 회수개시와 더불어 아래 항목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가) 제품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소비기한), 생산(수입)량, 창고재고량, 유통·판매현황(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 업소명, 연락처, 업소별 판매량과 유통재고량)

나) 회수계획량(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잔존 소비기한, 평균 소비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

다)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완료 예정일, 회수식품 처리계획,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등

라) 회수효율성 점검 계획

신속한 회수를 위해 각 유통단계별 모든 거래처에 회수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각 거래처가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회수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계획
(별지 제5호 서식)

2) 회수계획 보고

회수 영업자는 회수계획서와 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회수등급별 보고기한 내에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회수등급별 회수계획 보고기한 1·2·3등급 : 회수명령을 받은 후 3일 이내

나) 회수계획서를 보고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수명령 기관에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고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수 계획서 제출 후 회수계획량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수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회수명령 기관에 미리 연장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회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회수 모니터링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회수 영업자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회수계획 타당성 검토

가) 회수명령 기관은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수입)량과 창고재고량, 유통·판매현황(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별 출고량 및 유통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창고재고량 및 유통재고량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나)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 소비기한, 평균 소비주기 등을 감안하여 회수 계획량·회수방법·회수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명령

다) 회수효율성 점검계획 등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명령

2) 회수상황 모니터링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 영업자가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별로 신속하게 회수사실을 통보했는지,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거래처에서는 진열 및 판매중지,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회수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3) 회수진행 중 조치사항

- 가) 회수 영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재고량 압류·봉인
- 나) 회수명령 기관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판매된 회수 대상 식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 (거래업소명, 보관량 등)을 통보하여 회수대상 식품등이 신속히 압류·봉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행 여부 확인
- 다) 압류·봉인 요청을 받은 각 소재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회수 영업자의 거래처에 출장하여 회수대상 식품등을 압류·봉인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 기관에 통보
- 라) 압류·봉인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회수 영업자의 거래처에서 봉인해제를 요청하면 압류 기관에서는 회수대상 식품등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 기관에 통보
- 마) 「식품위생법」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른 영업자 회수의 경우,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시

3. 회수검증

가. 회수완료 보고

1) 회수완료 보고

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제품을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수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가) 회수대상 식품등 내역 및 회수 내역(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 나)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및 부적합 제품 폐기 등 처리 계획
- 다) 각 거래처에서 받은 반품 관련 증빙 서류 등
- 라) 회수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방지 대책

2) 회수등급별 회수기간(회수완료 보고 포함)

- 가) 1등급: 회수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회수 완료
- 나) 2등급: 회수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2일 이내 회수 완료
- 다) 3등급: 회수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7일 이내 회수 완료

※ 회수등급별 회수 기간 내에 영업자 회수 및 회수완료 보고를 해야 하며,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영업자로부터 회수기간 연장 사유를 제출받아 관리

나. 회수결과 검증

1) 회수결과 검증

- 가) 1차, 2차, 3차 등 거래업소별 유통재고량이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수제품은 압류 및 봉인(필요 시 거래업소 현장 확인)
- 나) 회수량 등 회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회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명령

2) 회수결과 검증 기한

회수명령 기관은 영업자 회수완료 보고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수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회수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다. 회수효율성 평가

회수명령 기관은 보완 조치 완료 등 회수가 종료된 이후 회수계획서, 회수완료 보고서 등 서류 확인 및 회수제품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회수의 신속성,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4. 시정 및 예방

가. 회수제품 처리

1) 회수 영업자 회수제품 처리방법

가) 폐기: 회수한 제품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회수명령 기관에 봉인해제를 요청하여 봉인해제를 한 후 폐기물 처리업소로 운반하여 폐기를 실시하고 폐기 결과보고를 증거자료(폐기 사진, 소각증명서 등)와 함께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

나) 식용외 용도 전환: 회수한 제품을 식용외 다른 용도(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회수·폐기 식품 사료 용도 전환 지침」에 따라 회수명령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료로 전환(별지 제3호 서식)

다) 반송(반출): 수입식품을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반송·반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회수명령 기관에 반송계획서와 수출계약서, 선하증권(B/L)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품을 반송하고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제출하여 반송 결과 보고

2) 회수명령 기관 확인사항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된 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처리방법에 따라 현장 입회 등을 통해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영업자가 폐기하고자 할 경우, 봉인 해제 및 현장 입회하여 폐기 확인

나) 영업자가 반송(반출)을 신청한 경우, 수출계약서 및 선하증권(B/L)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봉인 해제 및 수출 선적을 확인한 후 최종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종결처리

다) 영업자가 식용외 용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회수·폐기 식품 사료 용도 전환 지침」에 적합한지 확인 후 승인하고 최종 사료 용도 사용 결과를 제출받아 종결처리

나. 시정 및 예방조치

1) 회수 영업자

회수 영업자는 회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회수 발생 원인이 원료에 있을 경우, 원료 변경 및 검수방법 등 개선

나) 회수 발생 원인이 제조방법 또는 시설에 있을 경우, 제조방법 변경 및 시설개수 등의 조치를 강구

다) 회수 발생 원인이 유통과정에 있을 경우, 제품 포장·운송방법 등이 적정인지 검토하여 포장 재질 변경,

취급주의 등 경고표시 추가 등의 조치강구

라) 영업자는 회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역할과 추진방법, 절차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회수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회수관리 시스템 구축

2) 회수명령 기관

가) 「식품위생법」등 관련 규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평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경우 추가 보완할 것을 명령

다. 시정 및 예방조치 확인

1) 회수 영업자

회수 영업자는 회수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위한 대규모 설비교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회수명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회수명령 기관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 영업자의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회수 종료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 영업자의 회수완료 보고를 검증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모든 회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 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종료 공문을 발송하고 회수를 종료한다.

— 제4장 이의신청 —

1. 이의신청

가. 회수 영업자는 회수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 영업자는 회수명령 기관에 전화로 이의신청 의사를 먼저 알리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2.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을 받은 회수명령 기관은 영업자로부터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등급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명령 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수명령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건강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장 건강위해평가 —

1. '건강위해평가'는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등급 분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및 회수명령 기관이 협의 요청한 회수 영업자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평가·결정하는 것으로 '건강위해평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다.

2. '건강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담당부서장이 식품기준기획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 평가부장의 의견을 들어 실시하며,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장 영업자 준수사항 —

1. 신속한 회수통보 체계 유지

회수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회수대상 식품등 발생 시 1차, 2차, 3차 등 각 거래처에 신속히 회수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회수관리 문서기록 체계 설계·유지

회수 영업자는 회수 관리를 위한 문서 기록체계를 설계·유지하여야 한다.

3.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 보관

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년간 보관)

- 1)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 2)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 3) 제품 판매 등과 관련된 거래기록 서류

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2년간 보관)

-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
- 2)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
- 3) 수입식품등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내역서 및 내용명세서

다. 식품소분업자 (2년간 보관)

- 1) 식품소분에 사용된 제품(원료)의 구매관련 서류
- 2) 소분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 3) 영업자 간 거래와 관련된 거래기록 서류

라. 유통전문판매업자 및 기타식품판매업자 등 (2년간 보관)

- 1) 영업자 간 거래와 관련된 거래기록 서류

4. 영업자 자율회수 보고

가. 영업자는 의무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로 자율회수하는 경우, 회수 개시와 동시에 관할 기관(영업허가·등록·신고 기관)에 회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할 기관은 영업자 자율회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회수 3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장 행정사항 —

1. 회수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행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 기관 등)은 회수업무 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자 소속, 성명, 직급, 전자우편(e-mail), 연락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수실적 보고(관리)

회수명령 기관은 회수 종료 후 회수 결과,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 등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회수관리 문서체계 확립

행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 기관 등)은 회수 관리에 필요한 문서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활용)

4.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폐기대상 식품의 처리

「식품위생법」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폐기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영업허가 등록·신고 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회수완료 보고서

회수완료 보고서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등에 대한 회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품 내역	회수제품명(식품등 유형)	
	제조일자(소비기한)	
	수입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수입식품에 한함)	
	업소명 및 소재지	
	생산(수입)량(kg)	
	창고 재고량(kg)	
	출고량(kg)	
회수 내역	회수계획량(kg)	
	회수량(kg)	
	미회수량(kg)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부적합제품(회수제품 및 창고보관제품) 폐기 등 처리 계획
-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 주요 내용
 - 완료 예정일

20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귀 기관이 본인에게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 업소명: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 회수명령 일자:
- 회수명령 문서번호:

제품 내역	제품명(식품등 유형)	
	제조일자(소비기한)	
	수입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수입식품예한함)	
	생산(수입)량(kg)	
	창고 재고량(kg)	
	출고량(kg)	

- 이의제기 사유:

- 이의제기 내용: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 [영업자용]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소비기한)	
	회수구분	의무(), 자율()	회수사유	

회수 단계	회수단계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회수사실통보 (1단계)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요청 - 회수사실 인지 후 즉시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즉시 전파	
	1.2. 회수사실 공지 - 홈페이지 공개,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회수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림	
유통재고량 파악 (2단계)	2-1.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 - 증빙문서: 생산일지, 원료수불대장,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등 * 창고 재고량 파악 포함	
	2-2. 영업자가 거래처별(1차→2차 등)로 납품한 내역 확인 - 증빙문서: 거래내역 기록 서류, 거래명세표 등	
	2-3. 거래처별(1차→2차 등) 판매내역 및 재고량 확인 - 증빙문서: 거래처 입출고 기록, 통화 내역(업소명, 연락처, 통화자, 재고량 등) 등	
회수시행 (3단계)	3-1. 회수계획서 제출 - 증빙문서: 회수계획서 및 첨부서류(생산일지, 거래내역서 등) * 보고기한: 회수명령 후 (1·2·3등급) 3일 이내	
	3-2. 회수 모니터링 실시 - 거래업체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수(반품) 조치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신속한 회수(반품) 독려	
	3-3.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 증빙문서: 회수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거래처 반품 서류 등) * 회수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수완료 보고 ** 회수(완료보고 포함) 기간: 회수명령 후 (1등급)10일, (2등급)12일, (3등급)17일 이내	
사후조치 (4단계)	4-1. 재발방지대책 마련 - 부적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영업자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용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 [공무원용]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소비기한)	
	회수구분	의무(), 자율()	회수사유	

회수 단계	회수단계별 점검 항목	확인
회수인식 (1단계)	1-1.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확인 - (제품확인) 해당제품의 품목제조보고와 일치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1-2. 부적합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요청 - (통보)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업체에 유통 여부 확인 및 판매 중단 요청, 영업자는 거래처에 판매중단 요청 및 유통재고량 확인(전화 등으로 즉시 전파) √ 소분제품의 경우 원료로 사용된 제품의 제조업소(수입업소) 관할기관에 해당정보 공유 - (현장확인) 생산량, 창고재고량, 판매량, 유통재고량(판매처 재고 등), 유통경로 등 확인 및 창고재고량 압류 √ 출고 전, 전량 압류조치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으로 회수명령 미실시 사유가 명시된 출장복명서 등 증빙자료를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참고사항' 탭에 반드시 파일 첨부	
회수명령 (2단계)	2-1. 회수명령 및 홈페이지 공개 요청 - (회수명령) 영업자에게 우선 전화로 신속히 회수명령하고, 공문 시행 √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영업자용)'를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 회수관리 지도 - (시스템 등록)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명령 등록(회수대상 지정 → 회수명령) √ 회수제품 사진, 포장단위, 바코드번호(없을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확인) 철저 - (회수정보 공개) 식약처·전국 지자체에 회수명령 알림 및 회수정보 홈페이지 게재 요청 √ 회수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를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수신자에 포함하여 공문 발송	
회수계획서 검토 (3단계)	3-1. 회수계획서 검토 - (회수계획 검토) 회수계획서, 첨부서류(생산일지, 거래내역서 등) 등 검토하여 회수계획 적정성 확인 √ 인터넷 판매 내역 명시 여부 확인, 미흡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요구 - (시스템 등록) 회수 계획 내용 입력 후 회수계획승인(회수계획서 첨부)	

회수 단계	회수단계별 점검 항목	확인
회수 모니터링 (4단계)	<p>4-1. 회수 이행 여부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이행 및 온라인 판매 상황 등 모니터링(해당 제품 판매 여부, 회수 알림 문구 게시 여부 등) √ 미흡한 경우 영업자에게 시정 요구 <p>4-2. 부적합 항목 확인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회수의 경우, 해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검사 실시 	
회수결과 검증 (5단계)	<p>5-1. 회수결과 적정성 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검토) 회수량, 미회수 사유 및 첨부서류 진위여부 확인 √ 검증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회수명령 등 미흡한 부분 보완명령 - (현장확인) 회수된 제품과 회수 제품 동일여부 확인 및 회수제품 압류·봉인 - (시스템 등록) 회수결과 및 회수효율성평가 결과 시스템 등록 - (회수결과 보고) 식약처 및 전국 지자체에 회수결과 보고(알림) 	
폐기 및 개선조치 (6단계)	<p>6-1. 회수제품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 등) 폐기(소각·매몰 등), 수출국·제3국 반송(수입식품), 식용외 용도(사료)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폐기 시 현장 입회 및 영업자에게 최종 처리결과 제출받아 확인) √ 식용외 용도(사료)전환 시 사전에 신청서(첨부서류) 접수·검토 후 승인 - (시스템 등록) 폐기 내역(폐기결과, 폐기일자, 폐기량 등) 시스템 등록 √ '회수제품폐기' 탭에 회수완료보고서, 폐기결과 등 증빙자료 파일 첨부 <p>6-2. 시정 및 예방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및 이행결과 확인 - 필요 시 다른 소비(유통)기한 제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개선조치 결과 검증 	

[별지 제7호 서식]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 회수명령 기관: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소비기한)		
	회수구분	의무(), 자율()	회수기간	00.00.00 ~ 00.00.00	
	회수사유		회수등급		
회수결과	생산(수입)량(kg)	창고재고량(kg)	회수계획량(kg)	회수량(kg)	회수실적(%)

평가항목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증빙문서)	점수
1. 신속성 (35점)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소요 시간 회수사실 인지 시점부터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소요 시간					
	배점	15	배점 기준	24시간 이내 15점, 48시간 이내 10점, 72시간 이내 5점, 72시간 초과 0점		
	1-2. 회수계획 보고기한 준수 여부 회수계획서를 보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 관할기관이 보고기한 연기를 승인한 경우, 연기된 기한으로 평가					
	배점	5	배점 기준	회수계획 보고기한 이내 5점, 회수계획 보고기한 초과 0점		
	1-3. 회수기간 준수 여부 회수계획서상의 회수기간 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관할기관이 회수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연장된 기간으로 평가					
배점	5	배점 기준	회수기간 이내에 회수 완료 5점, 회수기간 초과하여 회수 완료 0점			
1-4.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소요 일수 회수종료 후 회수완료보고서 제출에 소요된 일수						
배점	5	배점 기준	회수종료 후 2일 이내 5점, 회수종료 후 2일 초과 0점			
1-5. 소비자 대상 회수사실 공지 소요 시간 회수사실 인지 후 회수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하는데 소요된 시간						
배점	5	배점 기준	24시간 이내 5점, 48시간 이내 3점, 72시간 이내 1점, 72시간 초과 또는 미공지 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증빙문서)	점수
2.정확성 (65점)	2-1. 회수계획량(유통재고량 등) 산정의 정확성 회수계획량 산정 시 회수제품의 생산량·창고재고량·출고량(거래처별 출고량 등) 및 각 거래처의 판매량·유통재고량 등을 충실히 파악했는지 여부					
	배점	50	배점 기준	생산량(수입량) 확인의 충실성 - 생산일지(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자료와 일치 10점 - 생산일지(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자료와 불일치 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0점	10	
				출고량(거래처별 출고량) 확인의 충실성 -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와 일치 20점 -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와 불일치 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0점	20	
			유통재고량(거래처별 판매량, 재고량) 확인의 충실성 - 거래처별로 받은 증빙자료와 일치 20점 - 거래처별로 받은 증빙자료와 불일치 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0점	20		
	2-2. 회수결과의 적정성 회수계획량 이상 성실히 회수했는지 여부 ※ 최종 회수제품이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완료 보고서의 회수대상 제품과 일치하는지(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유통)기한, 회수량 등) 여부 및 회수계획량 이상 회수했는지 여부 등 서류 및 현장 확인					
	배점	10	배점 기준	회수계획량의 100%이상 회수 10점 회수계획량의 100%미만 회수 0점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거래업체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수(반품) 조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신속한 회수(반품) 조치 등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	5	배점 기준	있음 5점, 없음 0점		
합 계						점
평가 의견						

20 년 월 일

평가자(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

회수효율성 평가기준(매뉴얼)

1. 신속성(배점: 35점)

평가지표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소요 시간	배점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회수사실 인지 시점부터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에 소요된 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4시간 이내</th> <th>48시간 이내</th> <th>72시간 이내</th> <th>72시간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5</td> <td>10</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	점수	15	10	5	0		
구분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									
점수	15	10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관할기관의 회수명령 이후 회수 영업자가 거래업체에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이메일·문서·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수사실 통보 및 진열·보관 제품 판매 중단·반품 요청 등 조치에 소요된 시간 확인 (※ 회수 영업자의 각 거래처별 회수사실 전파내역 기록 등 확인. 필요 시, 회수 영업자의 전파 내역을 관할기관이 거래업체에 직접 확인) 													
평가지표	1-2. 회수계획 보고기한 준수 여부	배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회수계획서를 보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회수계획 보고기한 이내</th> <th>회수계획 보고기한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회수계획 보고기한 이내	회수계획 보고기한 초과	점수	5	0						
구분	회수계획 보고기한 이내	회수계획 보고기한 초과											
점수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회수명령 후 영업자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회수등급별 회수계획 보고기한* 이내 인지를 확인 * 회수계획 보고기한: 회수명령을 받은 후 (1·2·3등급) 3일 이내 (※ 사전에 관할기관에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회수계획 보고기한 연기 승인을 받은 경우, 연기된 보고기한으로 평가) 													
평가지표	1-3. 회수기간 준수 여부	배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회수계획서상의 회수기간 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회수기간 이내에 회수 완료</th> <th>회수기간 초과하여 회수 완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회수기간 이내에 회수 완료	회수기간 초과하여 회수 완료	점수	5	0						
구분	회수기간 이내에 회수 완료	회수기간 초과하여 회수 완료											
점수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회수 완료(완료보고 포함) 시점이 회수계획서상의 회수기간 이내 인지를 확인 (※ 회수계획서상의 회수기간은 회수지침에서 정한 회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회수기간: 회수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등급) 10일, (2등급) 12일, (3등급) 17일 이내 (※ 영업자 회수 지연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관할기관에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회수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회수기간으로 평가) 													
평가지표	1-4.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소요 일수	배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회수종료 후 회수완료보고서 제출에 소요된 일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회수종료 후 2일 이내</th> <th>회수종료 후 2일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회수종료 후 2일 이내	회수종료 후 2일 초과	점수	5	0						
구분	회수종료 후 2일 이내	회수종료 후 2일 초과											
점수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영업자 회수종료일 및 회수완료보고서 제출일 확인 													

평가지표	1-5. 소비자 대상 회수사실 공지 소요 시간				배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회수사실 인지 후 회수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 하는데 소요된 시간 						
	구분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 또는 미공지	
	점수	5	3	1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회수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한 사실 여부 및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확인 						

2. 정확성(배점: 65점)

평가지표	2-1. 회수계획량(유통재고량 등) 산정의 정확성		배점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회수계획량 산정 시 회수제품의 생산량·창고재고량·출고량(거래처별 출고량 등) 및 각 거래처의 판매량·유통 재고량 등을 충실히 파악했는지 여부 				
	구분	증빙자료와 일치	증빙자료와 불일치 또는 증빙자료 없음	
	생산량(수입량) 확인의 충실성	10	0	
	출고량(거래처별 출고량) 확인의 충실성	20	0	
	유통재고량(거래처별 판매량, 재고량) 확인의 충실성	2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회수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생산량(수입량) 증빙자료: 생산일지(수입신고필증), 원료수불대장 등 - 출고량(거래처별 출고량) 증빙자료: 거래내역 기록 서류, 거래명세표 등 - 유통재고량(거래처별 판매량, 재고량) 증빙자료: 거래처에서 받은 제품 입·출고 기록, 거래처 통화 내역(업소명, 연락처, 통화자, 판매량, 재고량 등) 등 (※ 필요 시 회수 영업자가 작성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관할기관이 거래업체에 직접 확인) 				

평가지표	2-2. 회수결과의 적정성		배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회수계획량 이상 성실히 회수했는지 여부 				
	구분	회수계획량의 100% 이상 회수	회수계획량의 100% 미만 회수	
	점수	1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최종 회수제품이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완료 보고서의 회수대상 제품과 일치하는지(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유통)기한, 회수량 등) 여부 및 회수계획량 이상 회수했는지 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 확인 				

평가지표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배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거래업체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수(반품) 조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신속한 회수(반품) 조치 등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구분	있음	없음	
	점수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회수 영업자가 전화·후대전화 문자메시지(SMS)·이메일·문서·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에 회수대상 식품 등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여부 및 회수(반품) 상황 확인 및 독려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회수 영업자의 각 거래처별 회수(반품) 상황 확인 및 독려 기록 등 확인. 필요 시, 회수 영업자의 회수 모니터링 등 사실 여부를 관할기관이 거래업체에 직접 확인) 				

[첨부 2]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 [법률 제13295호, 2015.5.18]</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641호, 2015.11.18]</p>
<p>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대집행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계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 [법률 제13295호, 2015.5.18]</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641호, 2015.11.18]</p>
<p>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p>	
<p>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p>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대집행법 제4조의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 [법률 제13295호, 2015.5.18]</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641호, 2015.11.18]</p>
<p>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로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p>	<p>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p> <p>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p>	
<p>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 [법률 제13295호, 2015.5.18]</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대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641호, 2015.11.18]</p>
	<p>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다.</p> <p>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p>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관련 별지 서식: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등 회수업무 매뉴얼

발 행 년 월 2025년 3월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 및 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문 의 처 Tel. 043-719-2071

누 리 집 <http://www.mfds.go.kr>

위해식품등 회수업무 매뉴얼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